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9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구합8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대구광역시 달성군수
변 론 종 결	2017. 6. 13.
판 결 선 고	2017. 7. 4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6. 8. 31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,225,500원(본세 3,038,660원, 가산금 186,840원)과 재산세 60,250원(본세 58,500원, 가산금 1,750원) 합계 3,285,750원의 취득세등(증여세)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9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대구 달성군 B 대 274㎡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26.35㎡,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.21㎡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법무사가 예상 부과세액을 알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고와 C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.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.

2. 판단

가. 처분의 특정

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, 2016. 6. 10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,658,840원, 지방교육세 227,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,920원 합계 3,038,660원(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(이하 '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'이라 한다)을, 2016. 7. 3.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한 재산세 54,000원 및 지방교육세 4,500원 합계 58,500원의 부과처분 및 2016. 9. 5. 위 주택에 관한 재산세 54,000원 및 지방교육세 4,500원 합계 58,500원의 부과처분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'이라 하고, 이 사건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을 각 하였다. 한편,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등에 오류가 있으나,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임이 명백하므로,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.

나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2-19

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,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을 제5,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의 배우자인 C이 2016. 6. 16.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, 피고는 2016. 7. 13.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고, 피고는 2016. 9. 12. 원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2016. 9. 5.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,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. 3. 16.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서경희

판사 유선우

판사 김길호